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지게차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업기계와 달리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농업용으로 사용하여도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2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해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보안사항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운용·관리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범위에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제외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5. 3. 6. ~ 4. 15.) 예정 중
- 3)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 결과 비대상 통보('25.2.12.)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범위란 단서 중 “것은”을 “것과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는”으로, 비고란 중 본문(각 호 외의 부분)을 제2호로,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제2호 본문(종전의 본문) 중 “각 호”를 “각 목”으로 하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위 표에서 정한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매도인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① 법 제5조제4항-----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연락처	(044) 201 - 4366